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서

공동 제출 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우리는 한국에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한국에서도 검색, 자동 번역, 추천 알고리즘, 챗봇처럼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만나는 수많은 서비스들 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채용,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서비스도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확진자의 이동통신 기지국정보, 신용카드, 교통카드, 장소출입명부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프로파일링 처리하여 위치 및 동선을 파악한다. 본래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프로파일링을 처리한다. 경찰은 어느 지역이 범죄율이 높은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치안활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하였으며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거리 CCTV에 얼굴인식을 도입하였다.² 한국 정부는 최근 이를 넘어서 채용, 사회복지, 행정처분 등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도입하였거나 추진 중이다.

2020년 10월 23일, 시민사회단체들은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파악한 공공기관의 AI 면접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민간업체의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AI 면접이 공정한지, 면접 대상의 외모나 사투리를

¹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범죄 예방 시범운영”, 경찰청 보도자료(2020. 12. 28) ; “인공지능(AI)으로 범죄예방의 첫걸음 내디딘다”, 경찰청 보도자료(2021. 2. 26).

² <https://identityreview.com/south-korean-public-buildings-upgraded-to-covid-19-safe-security/>

차별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전혀 영향평가를 통해 검증하지 않고 사용해 왔음이 드러났다. AI 채용에서 불합격된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고 채용 탈락으로 결정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여러 공공기관들이 채용 절차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민간업체에 넘어간 지원자의 개인정보들이 사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오남용될 우려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기관이 AI 면접 사용과 관련한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³

정부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을 탐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⁴. 또한 정부와 국회는 2021년 3월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비롯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본법」(제20조)을 제정하였고, 행정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 중이다.

2021년 초에는 출시 2주만에 82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인기를 끈 민간회사의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Lee Luda)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유색인종 등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고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2021년 4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총 1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스캐터랩은 2013년부터 운영했던 자사 다른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내밀한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 건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루다’의 개발과 운영에 이용했고, 특히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규모가 20만 명에 달했다.⁵

2. 인공지능 관련 법제

유엔 사무총장은 “신기술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법제도의 공백을 검토 및 평가하고, 필요한 감독 체제를 수립하고, 신기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⁶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이 이미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제와 절차, 그리고 감독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³ <https://act.jinbo.net/wp/43476/>

⁴ “머신러닝으로 부정수급 탐지, AI로 강력범죄 전자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0. 4. 13).

⁵ <https://en.yna.co.kr/view/AEN20210428009552315>

⁶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ll countries: the role of new technologies f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유엔문서번호 A/HRC/43/29(2020. 3. 4).

한국은 2020년 6월 9일, 기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했다. 이 법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기술/산업진흥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이용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간 기업 자율적인 인공지능 윤리 시행과 법규제 면책을 추진하여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 5. 14. 이 법에 따른 고위험 인공지능 관리와 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지만,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 부처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견이다. 시민사회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기술 평가가 아니라 인권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실사(duo diligence)되는 것이 필요하며,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매우 높은 일부 인공지능은 금지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회가 빠른 속도로 추진중인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나 법안에서 인권적 영향은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인공지능에 대하여 영향평가도 수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코로나 위기 발생 후 정보주체의 의견 수렴 등 공중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지만, 아직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공지능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의 일부 개인정보 처리에만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개인정보 처리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0년 8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처리를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애초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업 내부의 상업적 연구를 포함하여 과학적 연구를 표방하는 모든 연구에 (해당 연구가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월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연구를 위해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제공, 판매할 수 있으며, 특정한 연구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서로 다른 기업의 개인정보를 결합하고, 결합된 정보를 가명처리된 형태로 원래의 기업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가 무분별하게 목적 외로 활용, 판매, 공유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프로파일링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 조항의 경우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민사회의 평가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3. 인공지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5월 24일, 120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⁷ 이 선언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인공지능이 인권,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제를 도외시키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을 규율하기 위한 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그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요구했다.

첫째,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산업 육성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인공지능 설계에 있어 소비자, 노동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에는 설명가능하지 않은 인공지능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서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한 영향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의 도입은 금지되거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으로 인한 권리 침해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⁷ https://act.jinbo.net/wp/ai_declaration